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30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이광희 · 박해철 · 이훈기
박지원 · 윤건영 · 송재봉
권향엽 · 허성무 · 서미화
전진숙 · 김문수 · 박정현
안태준 · 이주희 · 강준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공직 수행 적

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제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 및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력은 반드시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단서 신설>	5. ----- ----- ----- ----- ----- . 다만,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은 반드시 포함한다.</u>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⑤ ~ ⑮ (생략)	⑤ ~ ⑮ (현행과 같음)